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 등의 내용으로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243호, 2023. 3.21. 공포, 2024. 3. 22. 시행)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관련 절차를 변경하고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, 지정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중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(안 제14조 삭제)

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(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→ 문화재청장) 및 수립주기(10년 → 5년)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

나. 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(안 제16조)

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관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
다. 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(안 제16조의2)

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주기에 관한 내용 신설

라. 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(안 제16조의5)

안 제14조 삭제에 따라 삭제된 “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”의 약칭인 “지정지구” 추가

마.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(안 제18조의2, 제19조의2)

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2년을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과 동일하게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00. 00. 00. ~ 00. 00.)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기본계획의 공고)”를 “(기본계획의 고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문화재청장”으로, “공고하려”를 “고시하려”로, “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 및”을 “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”으로, “공고하고,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공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“(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)”을 “(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정지구”를 “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(이하 “지정지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. 3.22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</u> <u>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</u> <u>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</u> <u>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</u> <u>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</u> <u>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5년마다</u> <u>사회적 ·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</u> <u>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</u> <u>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</u> <u>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</u> <u>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</u> <u>특별보존지구(이하 “지정지구”</u> <u>라 한다)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</u> <u>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</u> <u>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</u> <u>비하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<u>제16조(기본계획의 공고) 특별자</u> <u>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</u> <u>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 제8</u> <u>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</u> <u>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</u> <u>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</u> <u>시 · 특별자치도 또는 시 · 군 ·</u>	<u>제16조(기본계획의 고시) 문화재</u> <u>청장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 고</u> <u>시하려-----</u> <u>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---</u> <u>-----</u>

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(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)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6조의5(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·해제 또는 변경(이하 “지정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8조의2(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)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

--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(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5(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) ① -----
-----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(이하 “지정지구”라 한다)-----
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) --

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
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
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
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른
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,
최고높이 5미터(경사지붕의
경우에는 7.5미터) 및 바닥면
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
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
이축하는 행위

2. ~ 6. (생략)

제19조의2(역사문화환경 보존육
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) 법
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
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
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조
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
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
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
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른
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,
최고높이 10미터(경사지붕의

-----.

1. -----
----- 3년-----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2(역사문화환경 보존육
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) --

-----.

1. -----
----- 3년-----

경우에는 12미터) 및 바닥면 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. ~ 7.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2. ~ 7.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	
연 락 처	(042) 481 - 3101